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지원절차



☞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소득 재산 기준은 사후조사 시 판단)

< 6가지 위기사유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 소득·재산 기준 >

1.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2. 재 산 : 7,25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08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부가 급여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34만원(4인기준)	6회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 / 월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신청방법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긴급지원담당(T. 940-314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